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건설·부동산·교통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 수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수준도 현행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 시행된다. 민간주택이면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5% 이내의 임대료 증액의 의무가 부여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및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 시행=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차례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18일까지, 10~20년 된 건축물을 2015년 1월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허가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내년 상반기 중 국내 모든 지역에서 고속도로·철도·지하철·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권역별 환승 할인 혜택은 그대로지만 추가 할인은 없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내년 3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택시회사나 개인 택시기사는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조치를 받는다.

금융·증권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기자차량순해답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이 200%로 해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대상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가 인상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지급 절차를 통합해 약관 전면부에 배치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고령자 고용연장하면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고속도로·철도·버스
교통카드 한장이면 'OK'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



서민 주거 안정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 건보 적용

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 선택 가능,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제도가 시행된다. 8월부터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농축산어업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20만원/㏊씩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 37만t를 사들였으나 내년부터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협정 이행을 위해 추가로 APTERR 공여용 쌀 3만t를 더 사들인다.

▲원유(原乳)가격 산정체계 개선=소비자 기호가 고지방 우유에서 고단백질 우유로 변화한 데 발맞춰 내년부터 유지방 중심의 현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유단백질 중심의 가격체계로 개편한다.

▲불법원양이입 처벌 강화=지금까지 불법 원양업으로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내년 1월 31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공정행태 개선을 통한 기맹점주의 권리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내년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불공정행태 개선을 통한 기맹점주의 권리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내년 2월부터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

불법여업으로 올린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 금 상한액은 현재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통신

▲비싼 항암제, 양전자단층촬영(PET) 건강보험 적용=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받는다. 로봇수술이나 캡슐 내시경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 살거나 노후 자동차 기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감소=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는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고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료비 부담 줄어=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가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구간 세분화로 상한액도 조정돼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

지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아진다. 소득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0원(5210원×209시간)이다.

▲체당금 상한액 인상=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이 월평균 임금의 80% 수준으로 오른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확대=정년연장을 하면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인 미만 사업장)에 게 정년폐지·연장으로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20%(우선지원기업 10%) 이상 임금감액에서 정년연장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구분 없이 10%) 이상으로

▲기존의 정부지원 기관과 협력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졌다.

▲기존의 정부지원 기관과 협력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아졌다.